

Tax News Flash

- Transfer Pricing & Customs

December 16, 2024

삼성 KPMG TAX 6 본부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 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OECD 발표자료 및 국제조세/관세 관련 이슈사항 및 동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 이전가격

해외판례: 인도 지점과 해외 본사 간 거래는 국제거래로서 이전가격 조정 대상에 해당

서론

최근 인도 조세심판원에서 인도 내 지점과 해외 본사 간 거래는 국제거래에 해당하여 이전가격 조정 대상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해당 판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실관계

중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T 사는 인도에서 변전소를 건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건설 계약에 따라 현지 업무 이행을 위해 인도에 지점(인도-중국 간 조세조약 상 고정사업장에 해당)을 설립하여 일부 업무를 위임하였습니다. 해당 지점은 본사를 대신하여 변전소 건설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관련 비용이 발생하였으며 그 중 일부 업무는 독립된 제 3 자 하도급업자를 통해 수행하였으나 해당거래와 관련하여 지점에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인도 세무당국은 고객과의 계약은 본사와 체결되어 수익은 본사에 귀속되는 반면 현지 납세의무가 존재하는 지점에서는 지속적으로 비용만 발생하여 손실이 발생하였고, 지점과

제 3 자 하도급업자 간 거래에서도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국제거래로 간주 및 정상가격을 적용하여 이전가격 조정이 필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납세자의 주장

- 과세소득 부재: 현지 지점의 경우 별도의 법적 실체가 아닌 사실상 본사로서 현지 에 귀속될 과세소득이 없으며, 이에 따라 이전가격 조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 조세조약 우선 적용: 납세자는 본사와 고정사업장이 인도-중국 간 조세조약 제9조 에 따른 특수관계기업에 해당하여 국내 이전가격 규정보다 조세조약이 우선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국제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본사와 지점 간의 거래는 별도의 법적 실체 간의 거래 가 아니므로 국제거래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과세당국의 주장

- 국제거래로 간주: 과세당국은 본사와 지점 간의 거래가 현지 이전가격 규정상 국제 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지점을 독립된 법적 실체로 간주: 과세당국은 현지 기업의 정의에 지점이 포함됨에 따라 설사 고정사업장이 독립된 법적인 실체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이전가격 목적 상 이전가격 조정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법적 실체인 기업으로 간주하였습니다.
- 현지 납세의무 존재: 설령 본사와 지점간 거래를 내부거래로 간주하더라도 궁극적 으로 지점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여 현지 납세의무가 존재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의 판결 내용

인도 내 이전가격 규정의 적용을 위해서는 거래 상대방이 현지 이전가격 조정의 대상이 되는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거래당사자 간의 거래가 국제거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조세심판원의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 해당 여부: 인도-중국 간 조세조약 제7조 제2항 및 OECD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정사업장은 독립된 법적 실체로서 현지 이전가격 조정 대상인 기업에 해당합니 다.
-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지점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진 않으나 본사를 위해 인 도 내에서 본사의 의사결정 및 지원 하에 건설 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 습니다. 따라서 본사와 지점은 현지 법인세법 제9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수 관계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국제거래 해당 여부: 본사와 고정사업장 간 거래는 현지 법인세법 제92조B 제2항 에 따라 국제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인도-중국 간 조세조약 제 9 조는 특수관계기업에 대한 소득조정을 금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지의 이전가격 규정과 상충되지 않아 조세조약 대신 현지 이전가격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조세심판원은 인도 내 지점과 해외 본사 간 거래에 대하여 이전가격 규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에 따른 이전가격 조정을 주장한 과세당국의 주장을 인용하였습니다.

결론

상기 인도 조세심판원의 판결은 이전가격 목적상 현지 지점과 해외 본사 간 거래가 인도 내에서 국제거래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더구나 해당 거래에 정상가격을 적용함으로써 인도의 과세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국내 본사가 인도에 지점을 설립하여 본사와 지점 간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사전점검 및 정책수립 등 더욱 유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02 글로벌최저한세

주요 국가별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업데이트 사항

2024년 1월 1일 기준, 국내 글로벌최저한세 제도가 전격 시행되었습니다.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최초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GloBE Information Return) 신고 기한은 2026년 6월이나, 일부 관할권에서는 글로벌 최저한세 구성기업 등록 및 추가 신고 업무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각 관할권별로 신고 요건 및 절차가 상이하여 기업들의 적시 대응이 필요함에 따라 아래 표에서 주요 국가별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업데이트 사항을 요약 및 정리하였습니다.

관할권	신고기한	신고대상	특이사항
헝가리	2024년 12월 31일	헝가리 구성기업(Hungarian Constituent Entities) 또는 해당 구성기업을 대신하여 지정된 기업과 헝가리 최종 모기업(Ultimate Parent Enti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서 작성은 ONYA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며, CIT 신고와 별도로 처리됨 - 대리인이 대신하여 신고서를 제출 가능하나, 불가능할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여 기업에 제공, 기업이 이를 세무 당국에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

오스트리아	2024년 12월 3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룹 내 오스트리아 구성기업(Austrian CE). 혹은; - 오스트리아 내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구성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스트리아 소재 구성기업이 둘 이상인 경우 다음 규칙에 따라 지정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오스트리아 내 "최종" 구성기업 2) "최종" 구성기업이 없는 경우, 오스트리아 내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구성기업 - 다국적기업 그룹은 특정 오스트리아 구성기업을 지정할 수 있음 (등록 필요)
베트남	2025년 1월 30일 (적용그룹 통보 및 베트남 신고법인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국적기업의 베트남 소재 구성기업, 혹은; - 베트남 세무 당국이 지정한 베트남 구성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하여 추가 세부 사항은 2025년 1월 시행령을 통해 공표될 예정 - 다수의 베트남 구성기업이 있는 경우, 그룹이 하나의 베트남 구성기업을 지정 후 신고해야 하며, 이는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0일 내에 최종 모기업(UPE)이 세무 당국에 통보해야 함 - 공식 통보가 없는 경우, 베트남 세무 당국이 그룹 내 특정 베트남 구성기업을 신고 의무자로 지정
	2025년 3월 31일 (추가 과세 납부를 위한 세무 등록(tax code))		
	2025년 9월 30일 (DMTT/IIR 적용 대상 법인 목록 제출)		
독일	2025년 2월 28일 (독일 내 특정 구성기업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하여 Notification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내에 본사를 둔 구성기업, 혹은; - 독일 구성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세무 당국은 그룹 내 독일 소재 신고 의무자(the minimum tax group leader) 아래와 같은 우선 순위에 따라 결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그룹 최종 모기업(UPE)이 독일 납세 거주자인 경우 2. 그룹 최종 모기업이 독일 납세 거주자가 아닌 경우, 독일 내 모든 구성기업의 공통 모기업 3. UPE가 지정한 독일 내 구성기업 4. 지정된 구성기업이 없을 경우, 그룹 내 가장 경제적으로 중요한 독일 내 구성기업 - 독일 내 구성기업이 하나만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이 신고 의무를 부담

국가별 적격소재지추가세(QDMTT) 신고기한, 대상 및 구성기업 절차가 모두 상이하며 지속적으로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 및 상기 표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BEPS Pillar Two 의 최신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시려면, [KPMG BEPS 2.0 Tracker](#) 를 방문하시거나 [TaxNewsFlash](#) 구독 및 알림 설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3 관세

[한-필리핀 FTA 비준 및 한-조지아 EPA 타결](#)

1. 개요

지난 11 월 14 일 대한민국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한-필리핀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했습니다. 국회 비준동의는 FTA 발효 전 마지막 국내 절차로서, 이번 비준동의안 처리에 따라 국내 절차는 모두 마무리되었으며, 필리핀 정부와의 최종 발효일 협상 이후 연내 FTA 발효가 예상됩니다. 또한 지난 11 월 27 일 한-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이하 EPA) 협상도 타결되었습니다. 금번에 타결된 한-조지아 EPA 는 국회에 보고된 EPA 추진 대상 국가 중 첫 번째로 타결된 협정이자 우리나라가 체결한 26 번째(협상타결 기준) 자유무역협정입니다.

*EPA : FTA 와 같이 관세철폐 등 시장개방 요소를 포함하면서도, 상대국과의 공동번영을 목적으로 협력요소를 강조하는 통상협정

2. 한-필리핀 FTA 비준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이 국회 비준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예정이며, 올해 말 FTA 가 발효되면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한국은 자동차 수출액이 연평균 1,340 만달러 늘어나며 제조업에서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14 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한-필리핀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했습니다. 국회 비준동의는 FTA 발효 전 마지막 국내 절차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한-필리핀 FTA 는 지난해 9 월 타결돼 그해 12 월 비준동의안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됐지만 21 대 국회가 처리를 미루면서 자동 폐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필리핀 의회는 올해 9 월 FTA 에 대한 비준에 동의한 상태"라며 "외교부를 통해서 우리 국회의 비준 동의 사실을 알리고 발효일을 정하게 되는 절차가 남아 있고, 연내 FTA 발효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3. 한-조지아 EPA 타결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과 Genadi Arveladze 조지아 경제지속가능발전부 차관은 지난 11월 27일 서울에서 한-조지아 EPA 협상 타결을 선언하였습니다. 금번에 타결된 한-조지아 EPA는 국회에 보고된 EPA 추진 대상 국가 중 첫 번째로 타결된 협정이자 우리나라가 체결/타결한 26번째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이번 한-조지아 EPA를 통해 상품은 전체 품목 중 우리나라는 93.3%, 조지아는 91.6%에 적용되는 관세를 10년 내 철폐하기로 타결하였습니다. 특히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승용차 관련, 신차뿐만 아니라 중고차 및 친환경차에 대한 조지아의 관세가 전면 즉시 철폐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나라 승용차가 일본 등 경쟁국 대비 가격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되며, 아울러 조지아 내 수입비중이 높은 중고차 분야에서도 한국의 제품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4. 시사점

한-필리핀 FTA 및 한-조지아 EPA 발효 시,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자동차 산업의 수출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기업은 특혜관세 혜택을 위해 한-필리핀 FTA 및 한-조지아 EPA에 따른 원산지 기준 충족 전략 사전 수립이 필요합니다.

Key Contacts

삼성 KPMG TAX6 본부



강길원 부대표(본부장)

T. 02-2112-0907



백승목 전무

T. 02-2112-0982



김상훈 전무

T. 02-2112-7939



윤용준 상무

T. 02-2112-0277



이영호 상무

T. 02-2112-6763



김태주 전무(관세)

T. 02-2112-7448



오영빈 상무(관세)

T. 02-2112-0435

home.kpmg/socialmedia



home.kpmg/kr/ko/home/services/tax.html

[Privacy](#) | [Legal](#) | [Unsubscribe](#)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4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